

질 의 회 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박 천 일

I.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파견자의 인건비와 예비비의 사업구조화



질 의

- 교육 및 파견자의 인건비, 예비비 등은 어떻게 정책사업·단위사업화 하는지?



회 신

- 실·국으로 구분되지 않는 인건비, 기본경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교육 및 파견자의 인건비는 총무과의 교육훈련정책사업 내지 단위사업으로 관리
 - 예비비는 예산부서 내 정책사업으로 관리

2. 지자체별로 사업구조화 서로 다를 경우



질 의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정책사업/단위사업 구조화가 서로 틀릴 수도 있을 텐데요?



회 신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 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조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명칭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기능 중 공통적인 사무(예 : 총무, 민원, 기획, 사회복지, 환경 등)의 경우 정책사업 또는 단위사업의 구조화 시 명칭 등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임.

3. 재무활동 개념



질 의

- 재무활동은 무엇인가요?



회 신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정책, 단위)의 수행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단순한 자금의 이전에 불과한 경비를 말하며 단위사업 수준에서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나뉜 것을 말함

4. 재무활동비의 범위



질 의

- 재무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회 신

- 재무활동에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포함됨.
- 내부거래지출에 속하는 편성목은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탁금원리금상환이 해당되고,
- 보전지출에 속하는 편성목은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이 해당됨.

5. 사업예산서를 근거로 성과평가



질 의

- 사업예산서를 근거로 실제로 성과평가를 하나요?



회 신

- 사업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성과지향의 예산제도로써, 사업예산서상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나, 성과계획서의 작성, 성과지표의 개발, 타 성과평가 제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는 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성과향상을 목표로 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으로서, 성과관리의 추진시기·방법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자체평가 체계상의 성과관리방법을 감한하여 자율적으로 채택·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도 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적합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방법론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사업예산 성과관리 방법론 및 지표은행 등을 제시할 예정임



6. 성과예산서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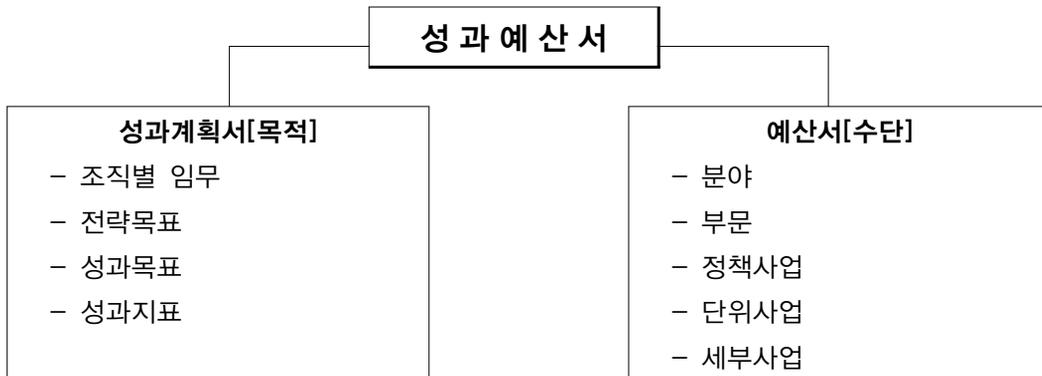
질 의

-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통합한 성과예산서는 어떠한 체계를 갖춘 것인지



회 신

- 성과계획서에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성과달성을 위해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임



II. 중기지방재정계획

1.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치방안



질 의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조치방안은





회 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기와 같은 조문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이를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 가능한지?



질 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혁신방안(재정정책과-464 2005.1.31)과 관련하여 타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선행의무해제 차원에서 사정변경 또는 예측변경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2005년에 수립한 05~09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하고 투융자 심사를 올린 사업이 있음. 도 심사결과, 조건부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계획 반영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음
 - 위의 지침에도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면 차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대로 차기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올려야 하는지
 - 수정계획에 대한 지침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절차에 의하여, 어떤 근거로 하는지



회 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맞추어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임
 - 따라서, 계획 수립 이후에 사정변경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 계획 수립(계획 수정 포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됨

2.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가 심의 가능여부?



질의

- 본예산 편성이후 도정 시책상 20억원 이상의 신규(시급) 사업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
 - 추경시점에서 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하여 심의 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추가 심의로 가능한지 여부
 - 또는 다음연도 연동화계획 수립시 그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단위사업비가 100억원일 경우 그 이상의 예산편성(투·용자 범위내)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 및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서 당해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계획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내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본 계획은 연동화계획으로서 계획후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비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연도별 총 재원규모에 지원경비 포함여부?





질 의

-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총 재원 규모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포함여부?



회 신

- 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재원규모에는 사업(정책·단위·세부사업)경비 외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이 모두 포함됨

Ⅲ.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 투융자심사대상 여부



질 의

- 아래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인지 여부?
 - 사업내용 : 지방대학 교육 연구장비 구입
 - 사업기간 : 08~12(5년)
 - 사 업 비 : 50억원(전액 도비)
 - 예산과목 : 민간자본보조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임



2.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여부



질 의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아래와 같은 BTO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여부 판단 ?
 1. 사업종류 : 복합문화시설 건립
 2. 사업비 : 1,500억원
 3. 사전비용 : 4억여원(도시계획시설결정, 타당성용역, 고시비용등)
 4. 재원조달 :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 계획중, 사전비용은 시비로 충당후 사후에 협약을 통하여 회수할 계획.
 5. 기 타 :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사로 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회 신

-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이나, 기본계획수립 경비 및 토지 등 현물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 대상임

3. 투자심사 총사업비의 개념



질 의

- ○○농산물 도매시장을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할 경우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계획>
 - 출자대상 : 현) ○○농산물도매시장
 - 부지대금 : 1,837억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 3,686억원)



- 출자시기 및 사후활용
- 민간투자 방식에 의거 ○○도시개발공사가 선 투자하여 이전·건설하고 ○○시에 기부체납 한후, 사후 종전부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수익창출할 예정(구체적인 방안은 용역 중)

Ⅲ. 지방채

1. 지방공사에서 발행한 부채의 지방채 포함 여부



질 의

- 지방공사에서 발행한 부채를 지방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회 신

- 지방채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 공사·공단채 발행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Ⅳ. 예산의 편성

1.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금 세입예산 편성과목



질 의



-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각종 수입금(시설 입장료, 사용료 등)을 시의 해당과에서 공단으로부터 매일 수입현황을 보고받아 징수 결정하여 시의 세입으로 처리할 때 적정한 세입과목은?



회신

-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수입금을 자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로 전출시킨 경우라면 공사공단전입금(224-02)으로 편성하면 될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자치단체 세입으로 편성할 때에는 입장료수입(212-07) 또는 기타사용료(212-08)로 세입 편성함이 타당함

2.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질의

- ①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시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② 의결정족수 미달로 지방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정리추경을 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군비부담이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반납 발생과 의결을 요하는 명시이월사업의 중단 등 예산운영에 대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이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 ③ 2004년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준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하는지



회신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서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



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의무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군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의회가 개최되지 못해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경우 결산시에는 기집행한 성립전 예산지출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

▶ 세입결산

예산액 (1)	전년도 이월액 (2)	성립전예산액 (3)	예산현액 (1+2+3)
------------	----------------	---------------	-----------------

▶ 세출결산

예산액 (1)	전년도 이월액 (2)	예비비 사용액 (3)	이 용 (4)	전 용 (5)	이 체 (6)	수입대 체경비 (7)	성립전 예산액 (8)	예 산 현 액 (1~8)
------------	----------------	----------------	------------	------------	------------	----------------	----------------	------------------

질의②③에 대하여

-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
- 따라서 ○○군의 경우 지금까지 심의·의결한 2003년도 당초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2004년도 예산불성립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 규정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지방비 분담



질 의

- ○○도지사가 도내 전 시군에게 향방용 우의, 수통(피), 개인장구요대, 서바이벌



게임장비, 응급처치세트, 빔프로젝트, 교육용 컴퓨터 등을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지시한바 적정성 여부



회신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예산의 편성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야 함
-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비록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관련 계획이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신청 등 사업추진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 할 사항임

4. 보조금 지원비율 등의 변경시 의회의 승인여부



질의

- 의회의 승인을 얻은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실제 보조사업 집행시 보조금 지원비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승인된 보조사업의 경우, 그 집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등이 다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의회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5. 분기 배정된 예산의 집행



질 의

- 매분기말에 다음 분기의 예산배정이 되는데, 배정된 예산을 배정된 날부터가 아닌 분기 시작일부터 집행해야 되는지(3월 30일 2/4분기 예산 배정)



회 신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지출은 동규칙 제48조의 자금배정에 의한 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가능함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3월 30일에 예산 및 자금이 모두 배정되었다면 배정일부터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가능함

6. 준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사전사용 가능여부



질 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당초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늘어남에 따라 생계비 사업비도 많이 증가되어 12월 생계비 지급 시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는 생계비 집행이 불가능한 형편이며 정리추경은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법정기일내(매월 20일) 집행되지 못할 상황인지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 ① 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은 성립전 예산사용이 불가한지
- ② 군비 부담분은 빼고 국도비만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군비는 예비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신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경우, 생계비 지원이라는 특수한 여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소요전액이 국·도비만 아닌 군비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사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7. 성립전 예산의 변경



질의

- 시설부대비(401-06)로 편성된 성립전 예산을 시설비(401-04)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은 동일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이를 삭감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동예산을 승인해야 하며, 동일 사업 중 기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8. 채무부담행위의 변경



질 의

- 채무부담의 상환액 산정 시 순공사비만 해야하는지, 상환이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 채무부담행위 승인 후 변경사유 발생 시 의회의결 시점은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 제2항에서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 총액을 채무부담행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상환연도에 세출예산에 계상하면 될 것이며, 채무부담행위의 증액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추가로 얻어야 함

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야간 단속공무원 시간외수당, 여비, 급량비 병급



질 의

- 정규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오후8시~익일 오전 3시)에 별도 출장명령에 따라 야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급량비의 병급이 가능한지



회신

- 공무원은 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의 근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내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공무원의 복무, 후생복지 등은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공무원에 대한 보수도 지방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편성 지급하며, 또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여비규정에 해당되는 출장, 교육 등은 정규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복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하면 야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에 대한 여비의 지급대상은 아니나, 시간외근무수당과 급량비의 지급대상은 해당된다고 사료됨

2. 재택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질의

- 재택근무명령에 의거 당일 오후 8시에 퇴근을 하여 재택근무를 할 시간에 개인업무처리를 위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회신

-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택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개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기간제근로자 간식비 현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

- 각기 다른 장소에 고용된 여러명의 기간제근로자 간식비에 대한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 기획재정부 발행의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급량비,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의거,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 점을 고려할 때 간식비의 현금지급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위 가게를 지정해 근무자들이 구입하여 일정기간(예, 한달에 1회 또는 2회)에 계산을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지방의회의원 능력개발비를 집행부 예산에 편성가능 여부



질의

-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능력개발비」를 의회비가 아닌 의회사무국의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한 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로 유형화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으며, 또한, 집행부 예산에는 “의회비” 계상을 금하고 있음



5. 위탁교육비 지원기준



질 의

-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학, 대학원에 다니거나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에는 지원불가” 라고 되어있음
- 산업체 위탁계약 체결을 맺은 대학들도 지원이 불가한 것인지 위탁계약 체결을 맺지 않은 일반 야간대학·대학원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회 신

-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위탁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학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발대상, 선발대상자의 자격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국내교육훈련 위탁 계획에 의한 경우 국내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다만, 소속직원의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토록 규정한 것임

6. 전문기술 교육시 자체 강사 원고료 지급



질 의

- 지방농촌지도기관이 수행하는 농업인·지도직공무원 전문기술 교육시 자체강사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지



회 신

- 원고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거나 응모 등에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집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료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지방농촌지도기관이 수행하는 농업인·지도직공무원 전문기술 교육시 자체강사에
게 원고료 지급문제는
 - 자체강사가 자발적으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교재를 개
발하여 직접 강의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고료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며
 - 이와는 다르게 지방농촌지도기관이 전문기술교육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집
필을 의뢰하여 교재를 개발한 경우에는 교재집필자에 대해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대상 및 추가지원



질 의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
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분야 등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일부 시군
에서는 지급대상 범위를 놓고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헬스클럽, 수영교실, 서예학원, 미술학원, 공인중개사자격증취득학원, 컴퓨터
학원 등도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대상으로 가능한 지
 - 연중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어학수강의 경우 6개월은 직업능력개발비를 지원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위탁교육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지



회 신

-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직원능력개발비 지급과 관련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
지침(143면)에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등 등록시 수강료 보조를
목적으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대상분야, 지급인원 등 기준은 자체 설정 운영하
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운영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동 경비는 직원의 능력개발 분야를 특정분야로 한정지우기가 곤란하며, 따라
서 지원대상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지역간에 사설학원의



여건등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② 직원능력개발비를 다른 예산과목과의 관계에서 비교할 때에 업무추진비인 “정원가산금”은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및 취미클럽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대상에 취미클럽활동에 속하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③ 또한, 직원 능력개발이라 함은 공무원의 업무적인 소양을 기르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능력개발도 이러한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④ 공무원의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관련되는 부서에 문의하기 바람, 직원능력개발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특정공무원에게 편중지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⑤ 끝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반경비는 공적인 분야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직원능력개발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적인 성격으로 지원되어야 함

8. 행사관련 급량비 지급



질의

-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훈련기간 중 교통안내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지급도 가능한 지



회신

- 공무원의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하여 설명하면, 현행 지방공무원에게 급식비로 지급 되는 경비는 일반운영비중 매식비와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로 구분되며, 여기서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지급 되는 것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일신 전속적인 경비임. 따라서 공무원이 어느 때 어디에서 매식을 하든 구제



- 적 집행기준을 정하지는 않음
- 한편, 매식비는 특근매식비, 각종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읍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 시의 주관 행사에 급량비 지급 문제는 우선 행사를 현안 업무추진으로 보아 매식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경비를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현안 업무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책임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며, 행사에 따른 주재 근무를 공무상 관내 출장으로 보는 경우 관내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를 지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나, 이 경우 매식비의 지급은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됨

9.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중식비 지급



질 의

-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에게 점심식사대금을 행사 운영비에서 지출가능한 지



회 신

- 우리부가 정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의 행사지원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에 대한 수용비, 임차료, 강사로 등의 경비로 행사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는 행사실비 보상금(301-10)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점심식사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행사관련 격려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10. 지방의원에게 포럼수강비 지급



질의

- 사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CEO경영혁신포럼에 지방의원이 수강신청 할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포럼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



회신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경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외에는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거나, 집행부 예산에 이를 계상할 수 없음. 따라서, 지방의원의 교육경비를 집행부 예산인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함
- 다만, 지방의회 의원관련 경비 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의원대상 교육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의결 등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합여부는 집행주체가 판단할 사항임

11. 전국체전준비 현지체재 공무원에 대한 체재비 지급



질의

- 도내 8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개최지 현지에서 체재하며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소요경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가능한 지 여부





회신

- 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지체재가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의 지급은 당해 자치단체의 복무규정 및 여비조례 등에서 규정한 지급범위 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운영하여야 할 사항임
- 다만, 예산편성 과목구분과 설정에 제시된 시설부대비는 토목, 건축, 공사 시설물의 수선 등 시설비의 집행에 있어 시공관리 및 공사의 감독에 소요되는 경비로, 업무의 성질상 체전 업무를 종합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2. 기준이상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질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액을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줄인 금액만큼 기타 동장이나 국장에게 추가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예를 들어, 구청장 기준액 53,000천원을 30,000천원으로 하고 동장 기준액 6,000천원을 8,000천원으로(기준액 초과 2,000천원)으로 할 수 있는 지.
(증가한 금액이 줄인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음)



회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한도를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직책에 따라 예산편성한도를 정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우리부가 정하고 있는 읍면동장의 예산편성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비성질상 불가함



13.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으로 민원 모니터요원(자원봉사자)을 운영하면서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에서 도서상품권, 영화 연극 관람권 등을 구입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 지



회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비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 질의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이는 보상금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상금 집행대상은 과목구분과 설정내용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음
- 아울러 도서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지급은 지급의 근거와 사유를 명백히 하여 예산의 낭비 및 선심성경비 등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14. 거리 응원전 행사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질의

- 이번 0000. 6. 000 월드컵 기간중 구민들의 거리 응원전 행사를 위한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이 가능한 지
(집행계획 : 대형스크린, 음향, 조명장비 대여비 등)



회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임

- 따라서, 귀 자치단체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우리부 훈령 제159)을 참조, 적정 과목에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은 불가함

15. 검직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질 의

- 동장과 사업소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7주동안 市の 과장이 ' 06.3.20~5.4일까지 동장으로 검직발령이 났음
- 검직발령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방법은



회 신

- 우리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우리부 훈령 제158호)에서 정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사에 의거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 이 경우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는 수평관계에 있어서의 겸임을 의미하며, 하위직이 상위직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상기 사항이 월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임



1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대상



질의

- 세무담당공무원이 구청내의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하여 타부서에 지원근무중인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여 감사·세무 등 특수업무담당분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직종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되, 담당업무의 조직단위를 실·과로 하여 지급받는 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세무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 받았으나, 동 기능전환으로 구에 근무하면서 교통과 등에서 세외수입업무(주차장 과태료 등)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으로 정해진 세무담당부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17.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 병급지급



질의

- 예비군 지휘관이 공석으로 장교로 제대한 직원이 겸직하여 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직책급수당과 대민활동비를 병급 지급할 수 있는 지



회신

- 직책급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 월액 시·도는 100,000원 시·군·구는 8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의 경우 월 5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18. “지방자치능력향상비” 예산편성 및 집행범위



질 의

- 2003년도 구예산의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항목에 지방의원들의 의정운영 및 정책능력 배양 등을 위한 “지방자치능력향상비” 를 편성하였는바, 예산편성 자체가 가능한지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별개로 「의정활동」 세항의 예산과목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지
-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의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대학원 지방의회 정책과정 등의 수강비 지출이 가능한지와 위탁교육비 집행의 가능한 범주는



회 신

- 의회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7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7대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거나 집행부 예산에 이를 계상할 수 없음
- 또한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의회관련경비와는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인 바 「의사운영」에서 의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연수관련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능력개발업무가 의사업무 영역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사무분장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교육관련경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연구능력 배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의원들의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 등은 집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합 여부를 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19.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치교실」운영비의 예산편성



질의

- ① 시의회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교실」을 운영할 경우 자치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보상금, 강사수당 등을 의회비 비목에 예산편성 가능한 지
- ② 「자치교실」 운영관련 예산을 의회비 비목에 편성할 수 없는 경우 의정운영공통 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지



회신

- 시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치교실」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5장 제3절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제35조 내지 제37조의2)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치교실 운영소요경비를 「의회비」 비목에 편성할 수 없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동 소요경비를 지출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됨

20. 의정활동홍보비의 예산편성



질의

- ① 지방신문의 지면을 통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사항(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홍보할 경우 홍보비 예산은 어느 과목에 편성을 해야 하며, 예산편성이 가능한 지



[의회 관련 신문보도내용에 대한 사례금이 아닌, 홍보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지방신문사에 게재 의뢰한 경우의 게재비(홍보비)를 뜻함]

- ② 지방유선방송사에서 본회의 장면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녹화하여 유선방송으로 방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홍보비(방송료)를 예산편성하여 유선방송사에 지급할 수 있는 지, 가능하다면 어느 목에 계상해야 하는 지
- ③ 예산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이 가능한 지



회 신

< 질의①과 ③ >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와 광고료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함
- 그러나, 자치단체 또는 의회가 홍보자료를 작성 지방신문사에 게재 의뢰한 경우 그 내용이 광고나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동경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차원의 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질의② >에 대하여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활동을 녹화하여 유선방송으로 방송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단체협의체 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동 경비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음



21. 특별위원회 구성시의 업무추진비 편성



질 의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방의회 관련경비 중 기초의회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이 의원 1인당 4,800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인당 1,000천원 범위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경우 특별위원회 소속의원 1인당 1,000천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할 경우 그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편성 가능한 지



회 신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과 관련한 추가인정범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 1인당 1,000천원 범위에 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관련한 기준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준액을 추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규정을 명문화한 규정임

22.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으며, 아울러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으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규정되어 있는바, 지역 대학교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지도자과정을 개설·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어 의원들이 수강하고자 희망할 경우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로 수강료 지원이 가능한 지



회 신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는 경비성격이 서로 달라 의정활동비의 집행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은 각각 별개의 사안임
- 따라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임

23. 기초의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활동비 지급



질 의

- 05.8.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06. 5.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 의회 의원들도 당적을 보유함에 따라 현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범위 안에서 의원들의 협의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외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며,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써 회의비, 공청회 개최경비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의원개인 명의로 활동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

24. 행사실비보상금 영수확인 방법



질 의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이 다수이고 참석자가 ○○단체의 회원일 경우 해당 단체 명의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서를 첨부하여도 되는지





회 신

-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단체명의로 일괄지급은 불가함
-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의 정당한 채주인 행사 참석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임
- 지방예산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금이므로 예산의 집행은 투명하고 정확해야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

25. 지방언론사의 학생대상 해외연수 지원가능 여부



질 의

- ○○지역 언론사에서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학습 및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연수를 자부담 50%, 시보조금 50%지원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업에 대하여 지역언론사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고, 특정 학생들의 수요에 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을 추진할수 없는 경우도 아니라 판단되며,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6. 경찰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질 의

- ○ ○ 경찰서에서 차량탐재형 도난, 수배차량 판독기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구입비 40,000천원을 지원요청한 바 경찰서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량탐재형 도난, 수배차량 판독기 설치 사업은 경찰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7.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비 부담시 과목구분



질 의

-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시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가 부족하여 사업대상자가 신축부지(또는 기부채납 경우)와 부족된 건축비를 부담할 경우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비(401-01)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각각의 과목들은 경비성질別に 따라 분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는 과목이 대부분이나, 때에 따라서는 민간, 타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경비의 과목도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과목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업의 추진방법으로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과목은 결정된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또는 시설비 과목중 어느 과목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가 결정되어 지는 것임. 참고로 자치단체가 동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과목에, 민간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사업을 추진케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8. 교육경비 보조 사업범위



질 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원어민 교사 채용사업(초등학교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과 농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안에 있



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될 경우에 보조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어민교사 채용사업과 농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현행 제도상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부문으로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일반재정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기해야 할 것임

29. 시설비 부기 변경가능 여부



질 의

-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관하여
 - 2006년도 당초예산의 시설비에 편성된 A마을 상수도관정 개발사업이 여건의 변화로 당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본 시설비를 B마을 상수도관로 교체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목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부기 변경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전용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의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하여도 무방한 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마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제도를 두



고 있음

- 그리고 예산전용이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시설비 내에서 사업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시설비는 경비의 성질상 다른 과목에 비해 금액이 크며,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부기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내의 사업부기 변경은 지방의회의 예산승인권은 존중하여 변경사용을 금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VI. 예산의 변경 관리

1. 명시이월비 의회승인액과 최종확정액과의 관계



질 의

- 명시이월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월액을 승인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지출액의 변동이 생겨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거 이월예산 확정시 의회승인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있는 지



회 신

-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0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없을 것임

2. 예산의 전용 여부



질 의

-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편성목, 통계목은 같음)변경이 예산의 전용에 해당 하는지



회 신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 국장 책임하에 상호용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됨
- 단,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의 편성목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용



질 의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를 쓰던 조직과 특별회계를 쓰던 조직이 합쳐지게 되어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회계는 광의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



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함

-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 사용해야 함

4. 예산의 이체시 의회 승인 여부



질 의

- 예산 이체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를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이므로 별도 의회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

VII. 기타 지방재정제도

1.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질 의

-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채용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 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재원을 기금의 여유재원 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정해놓고 있음(실제로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더라도)
- 국민체육센터 또는 노인문화회관 등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 1) 국민체육센터기금을 설치한 후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받는 것이 맞는지
 - 2)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내용처럼 직접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받아 재원을 누적시켰다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에 대해 용자를 해 주면 되는지



회 신

- 통합관리기금은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한 것임
- 재정용자는 기금회계에서 다른 회계(일반, 특별회계)로 용자해주는 것을 말하며 특정 사업에 용자해 주는 것은 아님
 - 1) 기금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한다면 먼저 동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 수년간의 조성과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센터기금으로 전입을 받은 후 통합관리기금으로 용자해 준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용자금을 회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됨
 - 2) 통합관리기금을 일반사업에 대하여 용자해 주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기금목적 사업에 위반하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기금으로 센터를 건립코자 한다면 상기 답변 1)처럼 하여야 하며 일반회계에서 단순히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받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기금 변경승인사항에 대하여



질 의

-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 기금 중 당초 지출계획이 하나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A,B,C 세부사업(고유목적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른 정책사업(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 1) 재무활동(예치금)에 편성된 예산을 정책사업(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할 경우(정책사업 전체금액의 10분의 5 이하)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경우 예산운용상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는지
 - 2) 같은 정책사업 아래 편성되어 있는 A, B, C 각각의 세부 사업간 고유목적사업비 전체의 10분의 5 이하 범위내에서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5/10이하의 기금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은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5/10 범위내)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사후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1)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주요 정책사업의 변경내용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더라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사업간 전용으로서 예산의 이용에 해당됨





3. 채권압류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질의



질 의

- 채권가압류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발생한 이자,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 처리 방법은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회 신

-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규정에 의거 보증금 반환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관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세입조치하고 추후 청구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정함

4. 금고지정 관련 조례규칙 제정시 법령 위반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과 달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금고를 지정할 경우 법령 위배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를 지정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고,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금고지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0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약정기간, 평가기준 등을 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질의사항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금고를 지정한 경우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당해 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5. 회계간 금고지정이 다른 경우 광역과 기초간의 수의계약방법



질 의

- ○○도의 일반회계는 A은행, 특별회계는 B은행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관내 시·군의 특별회계도 B은행과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회 신

- 금고지정방법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



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둔 취지는,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 등에 있어 광역과 기초의 상호 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한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서 자금의 관리 및 지방세 수납 등이 일반회계에 의거 대부분 이루어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 위의 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금고인 일반회계 금고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VIII. 지방예산 용어 해설

◇ 간접세(間接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말함.

예를 들어 주세는 납세의무자가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를 소비하는 사람임. 주조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주세를 주류의 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지게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음.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음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들 수 있지만 구별하면서 징수하지는 않음

◇ 공동도급계약(共同都給契約)

공사·제도·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공동도급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규제예산(規制豫算)

전통적인 예산통제방식과 같이 규제가 유발하는 총비용에 상한선을 정한 후 총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영향분석이 개별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규제예산은 모든 규제의 총비용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러한 상한선에 대해 통제를 함. 따라서 규제기관은 할당된 규제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으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규제예산의 한도에 이르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수 없게 됨

◇ 당겨쓰기

연도말까지에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까지에 수입될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현년도에 앞당겨 쓰는 것임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상 처리방법은 당겨쓰기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서 편성하고, 이로서 지출한 당해연도의 세출은 다음 세출예산에 과년도지출로 편입하여야 함

당겨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겨쓰기를 한 때에는 상급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변상책임(辨償責任)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변상책임의 주체는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변상책임의 소말사유가 없을 것임

참고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을 하는 공무원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부서 공무원도 변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 분권교부세(分權交付稅)

국고보조사업의 일부(149개 사업)를 지방에 이양하고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전의 통로역할을 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10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됨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94%이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편성과 운영과 자치단체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임

◇ 세입분권과 세출분권(歲入分權, 歲出分權)

재정분권은 크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혹은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이 지출하는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및 수준을 세입분권이라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조정없이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권한 및 수준을 세출분권이라고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의 수준은 국가전체의 조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즉, 국세 대 지방세 비율)로 파악하게 되고, 세출분권의 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일반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수준,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되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로 파악함

◇ 실행예산(實行豫算, executive budget)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성립된 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하는 예산을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 실·과에서는 이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실행예산의 주목적은 경제안정대책·경기조절대책 및 재정적자의 보전(補填) 등에 있으며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임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豫算의 目的외 使用禁止의 原則)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이 원칙의 예외로서 이용, 전용 등이 있음

◇ 자치사무경비의 지출의무(自治事務經費의 支出義務)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유지 운영과 공공시설의 관리, 주민복지증진 등 자치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사무처리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음” 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하여 실적과 전망 등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각종 세



법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사업들이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text{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times 100$$

-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의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



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豫算制度)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품목 중심의 예산체계에서 벗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유사한 기능의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정운용과 성과관리제도의 토대가 되며, 참고로 이에 따라 편성된 국가의 2008년도 예산은 16개 분야, 68개 부문, 8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function) - 부문(sub-function) -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activity) - 세부사업(task)의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분야’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목표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분류한 것을 말함

◇ 형식주의(型式主義)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손익을 산정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원인 발생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형식주의라고 함